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. 9. 9.
행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. 8. 21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24.

다. 상정일자: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(2026. 9. 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문화예술과장 임미희】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(안 제2조)
- 위원회 약칭 및 인용 조항 정비(안 제8조 및 제15조)
-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(안 제18조)

다. 참고사항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
-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촉구
[감사담당관-2933(2026. 3. 17.)호]
- 입법예고 ; 2026. 7. 16. ~ 2026. 8. 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① 조례의 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②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문화예술 관련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정의를 적용하도록 정비함.
- 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은 “이하”를 “이하 이 장에서”로 변경하는 등 약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문 표현을 정비함.
- 안 제18조는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기존 “연임”에서 “한 차례만 연임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기존 단서 조항을 삭제함.
-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기존 위원의 임기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.

③ 법적 타당성 검토

- 안 제2조에서 조례 자체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를 직접 인용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과 조례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, 향후 상위법 개정 시 조례와의 불일치 가능성을

줄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현행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는 문화예술, 문화산업, 문화시설 등 관련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서 직접 인용하는 방식은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.

- 또한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은 특정 위원의 장기간 재임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원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·객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.

④ 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상위법령과 조례의 정의 규정을 일치시켜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음.
- 조문 내 약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음.
- 축제심의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신규 전문가 참여와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음.
- 기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마련하여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위원 임기 및 연임 여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⑤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른 정의 규정을 조례에 직접 적용하도록 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, 일부 조문의 표현 및 인용관계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

- 특히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위원의 장기 재임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 부칙에서 기존 위원의 연임 여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위원의 임기와 개정규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제도 시행상의 혼란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, 조문 체계 정비 및 축제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문화예술진흥법」

[시행 2025. 11. 11.] [법률 제21091호, 2025. 11. 11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2. 17., 2013. 7. 16., 2016. 12. 20., 2018. 6. 12., 2020. 12. 22., 2021. 12. 7., 2022. 9. 27.>

1. "문화예술"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, 정신적,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(印象), 견문,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.

2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·제작·공연·전시·판매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3. "문화시설"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

나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

다. 「도서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

라. 「문학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

마.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

바.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·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

사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4. "문화이용권"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·전시·영화·도서·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된 증표를 말한다.

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17.>